

國內企業職務發明補償事例

職務發明補償規程(上)

○○○○○株式會社

(1978. 1. 1. 制定)

第1條 (目的) 本規程은 會社의 社員이 勤務에 관해서 이룩한 發明考案에 依據 取得한 特許權, 實用新案權, 意匠權, (以下 工業所有權이라 칭함)에 관한 사항을 規程함으로써 社員으로 하여금 職務發明에 대한 認識을 높여 發明考案의 保護, 奬勵 및 活用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本規程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각號와 같다.

1. 職務發明이라 함은 法人의 會社員이 그 職務에 관하여 發明한 것이 會社의 業務範圍에 屬하고 또 그 發明行爲가 會社員의 任務에 屬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任務는 現在의 것은 물론이요 過去(發明當時)의 任務도 包含된다.
2. 業務發明(經營發明)이라 함은 會社員의 任務外에 會社에서 取扱하는 業務에 關係되는 發明을 말한다.
3. 自由發明이라 함은 前號의 規程에 의한 發明以外에 會社員이 한 發明을 말한다.
4. 發明者라 함은 職務發明을 한 會社從業員을 말한다.
5. 會社從業員이라 함은 會社의 社員, 臨時雇傭員, 常勤嘱託을 말한다.

第3條 (權利의 會社承繼)

1. 會社는 發明者가 한 職務發明이 實用價值가 있어 企業發展에 寄與할 수 있다고 認定할 때는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承繼한다.
2. 發明者가 한 職務發明이 第3者와 共同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會社는 그 發明者가 가지는 權利의 持分만을 承繼한다.

第4條 (主管部署) 職務發明의 主管部署는 다음과 같다.

1. 本社 : 企劃室, 資料室
2. 서울事務所 : 業務課

第5條 (發明者에 대한 补償)

1. 會社는 前條의 規程에 의하여 權利를 承繼한 때에는 이 規程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补償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6條 (發明의 申告義務) 會社從業員이 職務發明을 했을 때에는 迅速히 그 發明의 内容을 自己가 所屬한 職務發明 主管部署 또는 所屬部署長을 거쳐 提出하여야 한다.

第7條 (職務發明 審議委員會 設置構成)

1. 職務發明의 審議를 위해 職務發明審議委員會를 둔다.
2. 職務發明審議委員會는 委員長 1名, 副委員長 1名, 委員若干名을 둔다.
3. 委員長이 有故時 副委員長이 代行하고 副委員長이 有故時는 미리 定하여진 序列에 따라 先任委員이 代行한다.
4. 委員長은 專務理事, 副委員長은 技術理事가 되고 委員은 主管部署長 外에 發明에 有關된 各部署長 및 委員長이 提請하여 社長의 承認을 얻어 任命한다.
5. 委員會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委員長은 專門家를 專門委員으로 委嘱할 수 있다.
6. 專門委員의 委嘱은 委員長이 提請하여 社長이 한다.

第8條 (審議) 職務發明審議委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한다.

1. 當該發明의 特許權 및 職務發明의 與否
2. 會社가 特許權을 承繼할 것인가의 與否決定
3. 特許權獲得에 따른 評價 및 补償問題
4. 特許實施權許與 및 共有問題
5. 職務發明規程의 改正 및 運營
6. 提案의 案件으로의 轉移
7. 其他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第9條 (特許性의 審議基準) 發明의 特許性審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產業에 利用될 수 있는 產業性
2. 技術的創作의 新規性
3. 技術內容의 進歩性
4. 不特許事由

第10條 (意見聽取)

1. 職務發明을 審議함에 있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本人 또는 關係者를 會議에 出席시켜 意見을 聽取할 수 있다.

第11條 (報告) 職務發明審議委員會에서 決定된 事項은 主管部署를 通過 社長에게 報告하고 이를 發明者에게 書面으로 回送하여야 한다.

第12條 (權利의 讓渡) 發明者는 會社로부터 職務發明에 대하여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假承繼한다는 決定의 通知를 받았을 때에는 遲滯없이 그 權利를 會社에 讓渡하여야 한다.

第13條 (出願 및 制限)

1. 前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讓渡받은 會社長은 지체없이 特許聽長에게 特許出願을 하여야 한다.
2. 前項의 規程에 의한 特許出願은 會社長名義로 하여야 한다.
3. 會社長은 第1項의 規程에 의한 特許出願을 한 경우에는 그 事實을 發明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4. 發明者는 會社가 當該發明者の 發明이 職務發明이 아니라고 認定하거나 또는 職務發明일지라도 그 特許를 받을 權利를 會社가 承繼할 것을 決定한 後가 아니라면 特許出願을 하거나 또는 特許를 받을 權利를 第3者에게 讓渡할 수 없다.

第14條 (登録補償金의 支給) 發明者로부터 補償金支給申請을 받았을 때에는 支給하기로 決定된 登錄補償金을 發明者에게 支給한다.

第15條 (登録補償金)

1. 會社에서 出願하여 特許公告 後登錄되었을 경우 그 發明의 優秀性 및 實用價值등을 參酌하여 權利每 1件마다 다음 각號의 登錄補償金을 發明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等 級	特 許	實用新案	意 匠
1	1,000,000	300,000	50,000
2	600,000	200,000	30,000
3	300,000	150,000	20,000
4	200,000	100,000	10,000
5	100,000	50,000	5,000

2. 特許出願을 한 發明에 대해서는 第1項에 規定한

登錄補償金中 一部를 우선 支給할 수 있다.

第16條 (實績補償)

1. 會社는 登錄된 發明의 實施活用狀況을 職務發明審議委員會에서 年 2回에 걸쳐 調查토록 한다.
2. 會社는 前項의 調查결과 登錄된 發明의 實施效果가 會社經營實積에 貢獻하였다고 認定하였을 경우에는 當該發明者에게 實績補償金을 支給한다. 다만 特許 3回, 實用新案 2回, 意匠 1回를 超過하지 못한다.
3. 前項에서 定하는 补償金額은 다음 5等級으로 나누고 委員會의 審查를 거쳐 委員長이 이를 決定한다.

等 級	1 級	2 級	3 級	4 級	5 級
金 額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第17條 (處分補償金) 第13條의 規程에 의하여 會社所有로 登錄된 特許權을 讓渡實施許與 또는 其他處分을 할 때에는 그 特許權의 内容 및 收入金等을 參酌하여 當該發明者에게 다음 각號의 补償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1. 特許權의 實施를 有償으로 許與할 때에는 그 實施料收入金의 2~5%以下에 該當하는 金額
2. 特許權을 有償으로 讓渡한 때에는 그 代金의 2~5%以下에 該當하는 金額
3. 職務發明을 會社 스스로 實施하거나 또는 第3者에게 無償으로 實施를 許容한 때에는 第1號의 規程에 準하는 金額

第18條 (補償金의 持分支給) 第15條, 16條, 17條의 补償金을 支給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發明者가 2人以上인 경우에는 그 持分에 따라 支給한다.

第19條 (退職 및 死亡後의 支給)

1. 發明者가 退職한 경우에는 第15條 및 第17條에 定한 补償金의 2分의 1에 該當하는 金額을 支給한다.
2. 發明者가 死亡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支給받을 수 있는 补償金을 相續人에게 支給한다.

第20條 (補償金의 不返還) 發明者 또는 그 相續人에게 支給된 补償金은 그 特許가 無効로 된 경우 이를 返還하지 아니한다. 다만 特許가 冒認에 의하여 無効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1條 (異議申請)

1. 發明者 또는 补償金을 支給받을 權利가 있는 者는 會社가 第16條 내지 第19條에 定한 补償金을 支給치 않거나 不當한 支給을 한 경우에는 그 事實을 안 날로부터 30日 以內에 社長에게 文書로써 异議申請을 할 수 있다.

- 前項의 异議申請은 所屬部署長을 經由하여 主管部署長에게 提出한다.
- 前項의 异議申請을 받은 主管部署長은 真實을 調查한 後 委員會에 報告하고 그 審議를 要請한다.
- 前項의 審議決果 委員會가 새로이 補償金을 支給하는 決定을 할 때에는 主管部署長은 즉시 社長의 承認을 얻어 그 決定에 따라 執行하여야 한다.

第22條 (自由發明의 承繼)

- 會社는 自由發明에 대하여 發明者로부터 自由發明讓渡申請書에 의한 特許를 받을 權利 또는 特許權을 會社에 讓渡한다는 申請이 있을 때에는 이 規程에서 定하는 職務發明이 承繼節次에 準하여 決定한다.
-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會社에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承繼한 경우에는 第15條 대지 第20條를, 特許權을 承繼한 경우에는 第16條 대지 第20條를 각各 準用한다.

(別紙 第1號 書式)

業務와 關聯된 發明申告書						
發 明	(1) 姓 名	(한글)		(2) 住民登録番號		
		(한문)		(3) 生年月日		
(4) 本 籍						
(5) 住 所						
發事 明項	所 屬	(6) 現在		職 位	(8) 現在	
		(7) 發明當時			(9) 發明當時	
(10) 發明의 種別	特許, 實用新案, 意匠			(12) 發明의 性質	職務發明 自由發明	
(11) 發明의 名稱						
職務發明規程 第6條 第1項에 의하여 本人의 業務와 關聯된 發明을 申告합니다.						
申告年月日 197 . . .						
申告人						
錦湖타이어 株式會社 貴下						
添付 : 發明明細書 1部						
所 屬 部 意 署 見	所屬部署長					

(別紙 第2號 書式)

特許(考案)登録通知書									
特 許 登 錄	發 明 者	(1) 姓 名		(한글)		(2) 住民登録番號			
				(한문)		(3) 生年月日			
	(4) 住 所								
	所 屬	(5) 現 在				職 位	(7) 現 在		
		(6) 發明當時					(8) 發明當時		
	(9) 發明의種類			特許, 實用新案, 意匠					
(10) 發明의名稱									
登 錄 補 償 金	(11) 登録番號				(12) 登録年月日				
			(한글)		(14) 住民登録番號				
			(한문)		(15) 生年月日				
	(16) 住 所								
	所 屬	(17) 現 在				職 位	(19) 現 在		
		(18) 發明當時					(20) 登録番號		
(21) 支給決定年月日									
(22) 支給決定額									
職務發明規程 第15條 第1項에 의하여 特許(考案)登録畢 및 支給決定된 登錄補償金을 위와 같이 通知함									
19 . . .									
部長 貴下									

添付：特許(考案)登録寫本

(別紙 第3號 書式)

自由發明(特許權)譲渡申請書									
發 明 者 發 明 의 表 示	(1) 姓 名		(한글)		(2) 住民登録番號				
			(한문)		(3) 生年月日				
	(4) 本 籍								
	(5) 住 所								
	所 屬	(6) 現 在				職 位	(8) 現 在		
		(7) 發明當時					(9) 發明當時		
發表 明 의 示	(10) 發明의種類		特許, 實用新案, 意匠		(12) 發明의內容		別	添	
	(11) 發明의名稱								
職務發明規程 第22條 第1項의 規程에 의하여 本人의 發明(特許權)을 會社에 譲渡하고자 申請합니다.									
19 . . .									
申請人 錦湖타이어株式會社 貴下									
添付：1) 發明明細書 1部 2) 特許證寫本 1部									

(別紙 4號 書式)

職務發明採點表

접수번호		제 목		제 출	
				소속	성명
직무발명 No.				직급	
구 분		평 점 기 준			
		A	B	C	D
독창적	상식적	모방적	독창적 모방	독창적 우수	회기적 특수사실 의 개선발명
	5	10	15	20	25
연구노력	착상그대로	착상을 약간 변형	상당한정도 노력인정	전문적 상당한 노력 및 연구	오랜동안 전문적 비상한 연구노력
	5	10	15	20	25
경제적 효과 (절감액) (년간)	소량의 효과 10만원 상당	보통의 효과 50만원 상당	대단한효과 100만원 상당	극히 대단한효과 500만원 상당	회기적인 효과 1,000만원 상당
	6	12	18	24	30
지속성	일시 가능	필요시 가능	당분간 계속 3년 이상	반영구적 10년 이상	영구적 20년 이상
	4	8	12	16	20
직책평가	중 역	부 차장	과장	대리·주임	사원
	4	8	12	16	20

총점 :

197년 월 일

위 원 ○ ○ ○ Ⓢ

(別紙 5號 書式)

職務發明賞等級表

등급	득 점	상 금
1	116 ~ 120	60만원 ~ 100만원
2	111 ~ 115	30만원 ~ 60만원
3	101 ~ 110	20만원 ~ 30만원
4	91 ~ 100	10만원 ~ 20만원
5	81 ~ 90	5만원 ~ 10만원

아낀대로 살림늘고 모은대로 국력논다!